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	자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New라이프케어0910				
보장성	116-81-03***		6R21612	23	800515-*****	이계중	719,04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엄				
보장성	202-81-45	5***	5112061865	51120618650000		이승유	470,880
	840730-*****	정미정					
	라이나생명보험 (주)		무배당플러스암보험(갱신형)				
보장성	104-81-85***		24314Z03	377	800515-*****	이계중	153,0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다이렉트 개인용				
보장성	102-81-32)*** -	M2015678043100000		800515-*****	이계중	505,760
	인별합계금액		1,848		1,848,68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40-89*	개***	일반	6,600
3-06-25*	밝***	일반	3,600
6-11-44*	봄*****	일반	8,400
9-91-38*	삼******	일반	5,200
9-91-34*	순****	일반	4,700
2-96-12*	연*****	일반	19,400
5-21-22*	연****	일반	126,300
9-82-06*	<u>o</u> ********	일반	110,7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84,9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84,9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6-82-02*	フト********	일반	628,820
9-91-47*	강****	일반	16,900
0-40-89*	개***	일반	30,100
9-91-34*	순****	일반	16,500
9-14-78*	0 ****	일반	194,900
4-09-05*	타***	일반	24,49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911,71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911,71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승유	12041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9-08-15*	가****	일반	2,140
6-82-02*	フ ********	일반	72,820
0-40-89*	개***	일반	15,200
7-02-14*	메****	일반	3,040
9-16-56*	□ ***	일반	6,100
9-96-10*	박****	일반	34,800
3-06-25*	밝***	일반	14,600
9-91-38*	삼******	일반	57,900
9-91-34*	순****	일반	66,800
9-91-53*	연******	일반	7,600
9-82-06*	<u>o</u> ********	일반	5,900
9-96-09*	0 ****	일반	4,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91,7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91,7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난임시술비(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9,089,245		
전통시장	671,920	인별합계금액	20,691,865
대중교 통	930,70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9,504,229		
전통시장	117,080	인별합계금액	19,976,459
대중교통	355,15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	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6,857,902	6,857,902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250,050	250,050
	일반	6,960,513	6,960,513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338,650	338,650
	일반	13,818,415	13,818,415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588,700	588,700
인별합	계금액	14,407,115	14,407,115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60118-07385168



NTS 🛠 국세청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0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1,568,066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2,250,349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588,7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211.27
조회대	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900	90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3,150	3,150
	일반	444,720	444,72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1,200	1,200
	일반	445,620	445,62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4,350	4,350
인별합	계금액	449,970	449,97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60118-07385168





-7-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442,92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2,7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4,3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457,320		
전통시장	61,000	인별합계금액	518,32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724,541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1,004,541
대중교통	280,000		

(단위:원) ■ 2015년도 사용내역

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1,124,697	1,124,697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60,450	60,450
일반	681,550	681,550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0	0
일반	1,806,247	1,806,247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60,450	60,450
계금액	1,866,697	1,866,697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1,124,697 전통시장 0 대중교통 60,450 일반 681,550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대중교통 0 일반 1,806,247 전통시장 0 대중교통 1,806,247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9-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 11 7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170,870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631,277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129-86-38***	(주) 이비카드	일반	4,100
129-86-38***	(주) 이비카드	대중교통	60,4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 617,61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91,000	연간사용액 617,610 91,000 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91,000 대중교통 0	91,000
대중교통 0	_
대중교통 0	0
200	J
일반 973,220	973,22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18,000	18,000
대중교통 0	0
일반 1,590,830	1,590,83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109,000	109,000
대중교통 0	0
인별합계금액 1,699,830	1,699,83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90,81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1,500,02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09,0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1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3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3,166,565		
전통시장	43,000	인별합계금액	3,255,765
대중교통	46,200		

■ 2014년도 사용액계 (단위:원)

일반	1,942,170		
전통시장	0	인별합계금액	2,034,570
대중교통	92,400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조회대	상기간	선택한 기간의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
일반		990,670	990,67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46,200	46,200
	일반	505,080	505,08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165,000	165,000
	일반	1,495,750	1,495,750
인별 연간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0
	대중교통	211,200	211,200
인별합	계금액	1,706,950	1,706,95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2015년도 사용내역 (단위:워)

■ ²⁰¹³ 년						
친그러스즈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69,130	388,450	156,500	26,64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23,390	126,560	367,750	10,000	1,495,750
		52,800	30,000	36,900	7,630	
		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거래	0	46,200	0	0	211,200
		0	55,000	55,000	55,000	

- 1. 선택한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을 선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부 사용액을 선택해제한 경우 선택 해제한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
- 2. 추가 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 사용액 : 추가공제율사용분(체크카드 등·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은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택한 기간과 상관없 이 2015년 연간 전체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5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시합시간포)	(646)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407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	해당없음 (U-보금자리론)	2013-02-19 2028-02-19	15년	2010-01-20	2013-02-19	1,357,683	1,357,683
(104-81-86***)	(U-보금자리론) 	124,000,000	124,000,00	0	0	1,557,005	1,337,003

- 1.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15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	

■ 기부자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계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	10,000
201-82-06995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법정기부금	60,000
201-82-00972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 단	종교단체지정기부금	130,000
인별합계금액			2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사업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16-

▶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